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6
----------	------

제출연월일: 2025. 5.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20조, 별표 1 신설)

- 현행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바,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 보상금 신청 요건과 지급 기준을 정해 명시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6조, 제9조 ~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 제24조, 제26조 ~ 제27조)

- 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용어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 1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별표 1 ~ 별표 6을 별표 2 ~ 별표 7로 변경함.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2025년 당초예산 반영(30백만원(구비))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16798호, 2025. 4. 14.)

- (개선의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지 추가할 것을 제안
- (반영)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 병기
- (개선의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
- (반영) 혹한기 및 혹서기 등 미운영 기간 명시

라. 입법예고: 2025. 4. 7. ~ 4. 28.(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경우에
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 별표 1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0조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및 별표 7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1.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보상금
종류	규격	
현수막	대형(5㎡ 이상)	500원/장
	소형(5㎡ 미만)	300원/장
벽보 및 전단	대형(30cm×40cm 초과)	50원/장
	중형(30cm×40cm 이하 21cm×29.7cm 초과)	30원/장
	소형(21cm×29.7cm 이하)	10원/장
명함형	명함형	3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25,000원

2. 보상금 신청 요건

가. 수거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

나. 보상대상: 전주·가로수·가로등·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등

다. 보상 제외대상

- 1)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2)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3)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 4)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5)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라. 보상금 신청 접수

- 1) 접수기간: 3월~6월, 9월~11월 ※ 휴한기(12월, 1월, 2월), 휴서기(7월, 8월) 미운영
- 2) 접수일시: 월 2회(첫째, 셋째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
- 3)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외
- 4) 지참물: 신분증(주민 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

마. 보상금 지급: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u>관리하여야</u> 한다.</p> <p>1. ~ 4. (생략)</p> <p>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 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 에 따른다.</p>	<p>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 ----- ----- <u>관리해야</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u>필요한</u> ----- ----- -----.</p>
<p>제9조(주민협회의회의 운영) ① (생 략)</p> <p>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 회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주민협회의회의 운영 등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주민협 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할 수 있다.</p>	<p>제9조(주민협회의회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필요한</u> ----- ----- -----.</p>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2. (생략)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5.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③ -----

----- 신청
해야 -----.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

1. 2. (현행과 같음)

3. -----

----- 고시
해야 -----.

4. 5.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생략)

제18조(안전점검 위탁절차 등)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

② -----

----- 처리해야 -----
----- 경
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심의위원회-----
-----.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 위탁절차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20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

-- 교부해야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

----- 사
람에게 별표 1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 보상금-----.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표시해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① ----- 법 제10조의2제1항-----

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
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
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
시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
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
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
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 별표 2와 ---.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별표 3과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
-----.

1. -----
----- 별
표 4와 -----.

2. -----
----- 별표 5 ---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
----- 별표 6과 -----
-.

② -----
----- 납부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별표 7-----.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계획 수립·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이 3천만원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건축과
- 직 위: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박준기
- 연락처: (052)290-4445